「서울광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의안번호	제974호	「서울광역자활센터	운영	민간위탁	동의안」
관련하여	제안설명	드리겠습니다.			

□ 본 동의안은

- "국민기초생활보장법" 제15조의10에 따른 「서울광역자활센터」운영사무와 관련, 최초 위탁 후 6년이 경과하였기에 "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" 제4조의3 제2항에 근거하여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
- 주요내용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·창업 지원 및 알선,
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,
 자활기업 창업지원 및 기술·경영 지도와
 그 밖의 자활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.
-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
 자활촉진 경험과 자활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는
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
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VIC MIL 202 UN MUTI		이상	제안	설명을	마치겠습니	
---------------------	--	----	----	-----	-------	--